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 1. 30.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03. 3. 4

다. 상정일자 : 제101회 평창군의회(임사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년 3월 7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방위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의 수를 「10인이상 20인이하」를 「10인이상 25인 이하」로 개정 (안 제2조)
-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 구성을 명문화 (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먼저 상위법을 살펴보면,

-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는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읍·면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2002년 3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에 군은 부단체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 구성위원을 최소 2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토록 하기 위하여 인원을 20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조정하고 또한 본부장과 상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안정을 기하였으며 읍·면 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운영규정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 기타 조례의 형식, 절차, 자구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시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